

컨설팅 계약서

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.

당사자

갑(의뢰인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/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을(컨설턴트)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/생년월일	
	주소		연락처	

계약 조건

컨설팅명		컨설팅 분야	
계약기간		투입 인력	
보수(총액)		지급방법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 컨설팅명의 자문 업무를 의뢰하고, 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컨설팅 범위)

을의 컨설팅 범위는 위 컨설팅 분야에 관한 현황 분석, 개선안 제시 및 실행 자문으로 한다.

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며, 대가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조 (기간과 투입 인력)

컨설팅 기간은 위 계약기간에 따르며, 을은 위 투입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투입 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는다.

제 4 조 (보수와 지급)

갑은 을에게 위 보수를 위 지급방법에 따라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
갑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
제 5 조 (자료 제공과 협조)

갑은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고, 을이 요청하는 관계자 면담 등에 협조한다.

갑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6 조 (성과물과 지식재산권)

을은 컨설팅 결과를 보고서 등 성과물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.

성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보수가 완납된 때 갑에게 귀속한다. 다만 을이 기존에 보유한 방법론·도구는 을에게 귀속한다.

제 7 조 (비밀유지)

당사자는 컨설팅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정보,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.

제 8 조 (경업금지)

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과 직접 경쟁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컨설팅 범위의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지)

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손해배상)

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 11 조 (관할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20 년 월 일

갑(의뢰인) : (서명 또는 인)

을(컨설턴트) : (서명 또는 인)

※ 본 계약은 참고용이며 컨설팅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하시고, 법적 효력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십시오.